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타지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 도로명 주소사업시행에 따른, 시설위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3조)
- 장애인 인권침해우려 표현문구 수정.(안 제12조 제2항)
- 이용료 감면대상 신설 - 의사상자.(안 제17조 제7호)
- 시설별 사용료의 조정 및 종목 신설.(안 별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13. 4. 3 ~ 4. 23(20일간)(의견없음)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2013.4.26)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타 지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지방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2013.03.14)를 거쳐 ‘원안 가결’ 승인된 사안으로서, 기존 요금은 전국 평균 요금 대비(수영/월회원) 85%정도이며, 2013년 7월 이후 9.7%, 2014년 7월 이후 9.2%를 인상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으로는,
 - 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문구수정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의사상자’를 추가하였음.
 - 시설이용료는 「안 별표」 ‘시설사용료 신규대비표’와 같이 장소 및 사용구분에 따라 조정하였고, 아쿠아로빅, 요가, 문화웰빙강좌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 프로그램별 ‘월 회원’ 이용료 물가인상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 수영(2013년) : 일반인 10%, 청소년 9.5%, 노인·초등학생 8.6%.
(2014년) : 일반인 9.1%, 청소년 8.7%, 노인·초등학생 10.5%.
 - 헬스(2013년) : 일반인 8.6%, 청소년 10%, 노인·초등학생 10%.
(2014년) : 일반인 10.5%, 청소년 9.1%, 노인·초등학생 9.1%.
 - 에어로빅 : 2013년 10%, 2014년 9.1%, 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
 - 탁구 : 2013년 12%, 2014년 7.1%이며,
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 이용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함.
 - 신설된 프로그램 중, ‘아쿠아로빅’은 ‘수영’과 같은 이용료로,
‘요가’는 ‘에어로빅’과 같은 이용료로 신설 조정하였고,
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하였음.

○ 프로그램별 '1일 회원' 이용료 물가인상 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개인(2013년) : 일반인 10%, 청소년 8.0%, 노인·초등학생 15%.
(2014년) : 일반인 6.1%, 청소년 11.1%, 노인·초등학생 8.7%.
- 수영단체(2013년) : 일반인 12%, 청소년 15%, 노인·초등학생 20%.
(2014년) : 일반인 7.1%, 청소년 8.7%, 노인·초등학생 11.1%.
- 탁구 : 2013년 15%, 2014년 8.7%이며,
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 이용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함.

○ 그리고,

시설이용료 인상부분이 비록 심의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 및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 안이 일부
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안 별표」 '시설사용료' 및 '신구대비표' 1부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 체육시설

시설명	장소 및 사용구분		사용자	기간별 적용기준		
				2013년 7월 이후	2014년 7월 이후	
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수 영	월회원	일 반 인	55,000원	60,000원	
			청 소 년	46,000원	50,000원	
			노인 · 초등학생이하	38,000원	42,000원	
		일 일 회 원	개인	일 반 인	3,300원	3,500원
				청 소 년	2,700원	3,000원
				노인 · 초등학생이하	2,300원	2,500원
			단체	일 반 인	2,800원	3,000원
				청 소 년	2,300원	2,500원
				노인 · 초등학생이하	1,800원	2,000원
	아쿠아 로빅 헬 스 에어로빅 요 가 탁 구	월회원	일 반 인	55,000원	60,000원	
			청 소 년	46,000원	50,000원	
			노인 · 초등학생이하	38,000원	42,000원	
		월회원	일 반 인	38,000원	42,000원	
			청 소 년	33,000원	36,000원	
			노인 · 초등학생이하	22,000원	24,000원	
		월회원	일 반	33,000원	36,000원	
		월회원	일 반	33,000원	36,000원	
		월회원	일 반	28,000원	30,000원	
				일일회원	2,300원	2,500원

※ 탁구장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임

※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강좌 시설

시설명	프로그램 명	수강료
근로자 문화센터	문화 웰빙 강좌	10,000원 ~ 50,000원
•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주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 기타시설

시설명	장 소		사용기준	기 본 사용료	비 고
근로자 문화 센터	기본 시설	강 당	평일주간 1회 (4시간이내)	6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 외 무 대	”	30,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 (강당)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4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야간사용은 18:00 ~ 22:00까지

별표 신규대비표

현행

행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와 관련)

□ 체육시설

시설명	장소	사용일수	일반인	청소년, 군인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월 회원	50,000원	42,000원	35,000원	
		일일 회원	개인	3,000원	2,500원	2,000원
			단체	2,500원	2,000원	1,500원
	헬스장	월 회원	35,000원	30,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 회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탁구장	월 회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일일 회원		2,000원	2,000원	1,000원		

개정안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 체육시설

시설명	장소 (회원)		구분	기간별	적용기준	
				2013년 7월 이후	2014년 7월 이후	
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	월 회원	일반인	55,000원	60,000원	
			청소년	46,000원	50,000원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38,000원	42,000원	
		일일 회원	개인	일반인	3,300원	3,500원
				청소년	2,700원	3,000원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2,300원	2,500원
			단체	일반인	2,800원	3,000원
				청소년	2,300원	2,500원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1,800원	2,000원
		아쿠아로빅	월 회원	일반인	55,000원	60,000원
				청소년	46,000원	50,000원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38,000원	42,000원
	헬스	월 회원	일반인	38,000원	42,000원	
			청소년	33,000원	36,000원	
			노인·초·중·고등학생 이하	22,000원	24,000원	
	에어로빅	월 회원	일반	33,000원	36,000원	
	요가	월 회원	일반	33,000원	36,000원	
	탁구	월 회원	일반	28,000원	30,000원	
		일일 회원		2,300원	2,500원	

※ 탁구장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임

※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기타시설 : (생략)

☐ 문화강좌 시설

시설명	프로그램 명	수강료
근로자 문화센터	문화 웰빙 강좌	10,000원 ~ 50,000원
•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 ~ 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 기타시설 : 현행과 같음